

제335회 임시회  
2014. 10. 24.(금)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의회운영위원회

「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 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박 한 범 의원 외 6인

나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0월 13일

(제3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의회운영위원회 박 한 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개업 중인 변호사로 법률고문만 위촉하던 것을 도의회 입법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등으로 입법고문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명칭을 “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”로 함(안 제명)
-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인원 및 자격요건을 정함(안 제2조)
  - 의장은 3인 이내의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음
  - 입법고문은 입법분야 10년 이상인 사람, 법률고문은 도내에 개업중인 변호사로 위촉함
- 입법·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자문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  - 입법고문은 자치법규 제·개정 및 도의회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등
  - 법률고문은 의회관련 법령해석 및 의회 당사자 소송수행 등
-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필요 시 재위촉 가능함(안 제5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(안 제6조)
- 입법·법률고문의 수당 및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정함(안 제7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이홍신)

- 그동안, 도의회는 입법 및 의정분야에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못하여 자치법규 제·개정안에 대한 입법과 의안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,

-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입법고문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

7. 소수의견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하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요청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·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.

1.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
2. 충청북도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

② 법률고문은 충청북도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.

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자문사항)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사항
2.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
3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

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
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사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

3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

제4조(자문요청 등)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처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. 다만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바로 자문요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고문 또는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위촉기간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촉해제) 의장은 입법·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
2.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

3.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월 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
4.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
5. 입법·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
6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
7.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
제7조(수당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, 입법·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「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자문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」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
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제 호

위 축 장

소 속 :

성 명 :

「충청북도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제2조에 따라 귀하  
를 충청북도의회 입법(법률)고문으로 위촉합니다.

(위촉기간 : 20 . . . ~ 20 . . . )

20 년 월 일

충청북도의회의장 직인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## 자문처리 실적부

자 문 사 항				처 리 결 과		
연월일	건 명	의뢰인	의뢰내용	연월일	고문인	회신내용

※ 건명란에는 입법자문, 법령해석, 법령자문, 소송사건 등을 기재함.

#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쟁송사건 및 법률적 사안은 물론 입법적 사안에 대한 입법·법률 고문의 자문 수행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수당 지급
- 기존 법률 고문변호사 1인에서 입법고문 1인 추가로 위촉인원 확대

## 3. 관련조문

-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및 제7조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입법·법률고문 자문 수당 지원

### 나. 추계 결과

- 입법·법률고문 자문 수당 비용 : 4,800천원/년
  - 고문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수당 지급 : 1인당 2,400천원/년
  - 2인 위촉시 4,800천원/년 (= 2,400천원×2인)

### 다. 채용조달방안

- 의회사무처 자체재원 사용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 6. 작성자 :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강 성 택

